

공 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번지 일원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공고합니다.

2026. 7. 13.

성 남 시 장

1. 공람기간: 2026. 7. 13. ~ 2026. 7. 27.(14일간)
2. 공람장소
 -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6층, ☎ 031-729-4162)
 - 조합 사무실(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센터동 104호, ☎ 031-776-3537)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 사본(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 가. 사업명칭: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나.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번지 일원
 - 다. 구역면적: 26,584.00㎡
 - 라. 사업시행자: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정현석)
 -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 바. 사업규모: 공동주택 8개동 8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주요 변경사항
 - 채광이격거리 기준선 변경에 따른 층수 조정
 - 평면 개선에 따른 평면 및 면적 변경 등
5. 의견제출: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 제출방법: 방문제출, 팩스 및 우편(공람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제출기간: 2026년 7월 13일 09:00부터 2026년 7월 27일 18:00까지
 - 제출기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6층 / Fax: 031-729-4509)
6.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공원) 내 무단점유적치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이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의무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8.

중 원 구 청 장

- 1. 내용 : 공유재산(공원) 내 무단점유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2. 기간 : 2026. 7. 8. ~ 2026. 7. 22.
- 3. 공시송달 대상(불법행위 현황)

연번	위 치	행위자	불법행위현황	비 고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946번지	미 상	무단점유적치물 적치	

- 4. 공고장소 : 성남시 홈페이지
- 5. 문 의 처 : 중원구청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031-729-6451)

6. 공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의 규정을 위반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하오니 2026. 7. 22. (수)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미이행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등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원구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031-729-64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위치도 1부. 끝.

제 2026-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점유시설물(리어카 등)을 2026년 7월 3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7월 22일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중원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중원구 도시미관과 ☎ 031-729-6451으로 연락 바랍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비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946	무단점유적치물 적치 (리어카 등 일체)	대상 미상

2026년 7월 8일

중원구청장

□ 위치도

